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17

발의연월일: 2020. 8. 7.

발 의 자: 민형배・이성만・이용빈

양정숙 · 김철민 · 이정문

김경만 · 양향자 · 이형석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'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. 수업방법, 출석일수 인정,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수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, 방송·통신·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. 또한, 원격수업의 수업방법, 출석,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"을 "방송·통신·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(이하 이 조에서 "원격수업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"을 "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칙으로 원격수업과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, 출석, 평가 등"으로 한다.

②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수업 등) ① 학교의 수업	제22조(수업 등) ①
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주간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,	
<u>방송·통신에 의한 수업</u> 및 현	<u>방송·통신·인터넷 등을 활</u>
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	용한 원격수업(이하 이 조에서
수 있다.	<u> "원격수업"이라 한다)</u>
<u><신 설></u>	②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「재난 및 안전관리
	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
	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
	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주간
	수업, 야간수업, 계절수업을 원
	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
<u>송·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</u>	칙으로 원격수업과 학교 밖에
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	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, 출
<u>업방법</u> 을 정하려는 경우에는	<u>석, 평가 등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야 한다.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